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A
검 사 연선모(기소), 김성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재선(국선)
판 결 선 고 2026.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15.경부터 2025. 8. 12.경까지 안동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21만 원을 지급받고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 D, E, F 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순번 16), 압수목록(순번 17), 각 문자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 문자메시지 파일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8), 각 수사보고서(순번 19, 21, 23, 29~30, 37, 39)

1. 각 사진(순번 9, 20, 2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1년 1개월 정도로 짧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바,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폐업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척추측만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영언 _____